

#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중  
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납세자인 군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납세 담보요구의 예외 사유 보완(제24조 관련)

-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추가

### 나.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(제39조 제3항 관련)

- 체납처분 중지 공고 시 1개월로 기간 연장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 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평창군공고 제2015-457호(2015.4.24~2015.5.14) 결과,  
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4688호, 2015.4.29)
- 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5121호, 2015.5.12)
- 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주민생활지원과-26472호, 2015.4.30)
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별첨 1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법 제2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

제39조제3항 중 “10일간”을 “1개월간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납세담보의 요구)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4조(납세담보의 요구) ----- ----- ----- 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법 제26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</u></p>
<p>제39조(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·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<u>10일간</u>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39조(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<u>1개월간</u>----- 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(별첨 1)

##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장동기
연락처	(033) 330-2270

(별첨 2)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세기본법

**제26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** ① 천재지변, 사변(事變), 화재(火災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·신청·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·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사망·질병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.

**제82조(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세기본법시행령

제5조(기한의 연장사유 등) 법 제2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
2.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(喪中)인 경우
3.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·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
4. 정전, 프로그램의 오류,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
  - 가.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
  - 나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"지방세수납대행기관"이라 한다)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
  - 다.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
5.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(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)
6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제8조(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)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절을 준용한다.

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제5조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.

## □ 국세징수법

**제85조(채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)** ①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.

②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「국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을 때에도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채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채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납자(채납자와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)도 채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